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시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례제4조의2)

- 시단위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농업인대표 등을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구성
-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 심의
 1.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 조정, 읍면동의심사사항 재검토·심의, 사업대상자 확정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례제4조의3)

- 읍면동에서는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하여 9인 이내로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시에 제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를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농업인대표 등을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③위원회는 농업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조정, 읍면동의 심사사항 재검토·심의, 사업대상자 확정 등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3(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읍면동에서는 제4조의2의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하여 9인 이내로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시에 제출한다.

③위원장,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등 기타사항은 제4조의2에 준한다.

제1조 본문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하고, 제2조제2호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제7조 본문중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구미시 농업기계구입지원 조례	법령제명 띄어쓰기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④(생략) ⑤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④(현행과 같음) ⑤(삭제) 제4조의2(시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농업기계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1.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시지부 지도경제과장, 농업인대표 등을 시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③위원회는 농업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조례 제3조제1항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 배정물량조정, 읍면동의 심사사항 재검토·심의, 사업대상자 확정 등 2.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3(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읍면동에서는 제4조의2의 시단위 심의위원회에 준하여 9인 이내로 읍면동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사업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시에 제출한다. ③위원장, 위원회 임기, 회의 및 의결 등 기타사항은 제4조의2에 준한다.	